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131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피고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7 지분에 관하여, 원고 B, C에게 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,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. 4. 7. 접수 제58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, 청구원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, 원고들의 주장은 망 E에 대한 법정상속분(원고 A는 3/7, 원고 B, C는 각 2/7)만큼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광선

별지